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5333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박정수, 임하린, 강현구, 염승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현아, 고단비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2. 16.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787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13. “C은 원고에게 93,973,43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31.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1. 3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C의 모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1. 1. 30.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C(상속지분 각 1/5)은 2021. 2.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는 2021. 2. 20.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H은 2021.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바로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C의 몫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C에게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C의 유일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 2)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2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가액은 1,440만 원($7,200\text{만 원} \times 1/5$)인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소액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해야 할 금액은 위 부동산 지분 가액 상당인 1,440만 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

별지